##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소관 훈령(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등 47개)의 조직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직명칭 등 변경

| 조번호 | 행정규칙 명 | 개정 내용 |
|---|---|---|
| 제1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 조직명칭 등 변경<br>- 문화재청→국가유산청<br>-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 제2조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
| 제3조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 |
| 제4조 |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 제5조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 |
| 제6조 |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 |
| 제7조 |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
| 제8조 |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 |
| 제9조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 |
| 제10조 |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 |
| 제11조 | 문화재청 감사규정 | |
| 제12조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 |
| 제13조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
| 제14조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
| 제15조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 |
| 제16조 |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 제17조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국정 및 운영 규정 | |
| 제18조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
| 제19조 | (문화재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 |
| 제20조 | 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 | |

| | | |
|---|---|---|
| 제21조 |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
| 제22조 |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
| 제23조 |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윤영규정 | |
| 제24조 |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 |
| 제25조 |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 |
| 제26조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 제27조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 |
| 제28조 |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
| 제29조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
| 제30조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
| 제31조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
| 제32조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 |
| 제33조 | 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 |
| 제34조 |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 |
| 제35조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
| 제36조 | 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 | |
| 제37조 |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
| 제38조 | 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 제39조 |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 |
| 제40조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 |
| 제41조 |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
| 제42조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 |
| 제43조 |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 |
| 제44조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 제45조 |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
| 제46조 |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 |
| 제47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생　　략

문화재청 고시 제 호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등 47개 문화재청 훈령 일괄개정안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등 47개 문화재청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에게"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문화재청장은"을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

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의 전승활동(15점)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 (5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 (5점)</td><td>ㅇ 지표정의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또는 이수자 등록 여부<br>ㅇ 측정산식 :<br>、전승교육사의 경우 조사시점부터 전승교육사 인정기간을 구간화하여 3단계 척도(5~3점)로 가점 처리함.<br>、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로 등록된 자는 2점을 가점 처리함.<br>- 조사척도 : 정량평가<br><전승교육사 경력><br><table><tr><td>가점</td><td>5점</td><td>4점</td><td>3점</td></tr><tr><td>등급</td><td>11년 이상</td><td>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table><br><이수자 등록 여부> : 2점 처리<br>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또는 국가유산청 행정포탈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br>ㅇ 조사주안점 :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기간 및 이수자로 등록 여부<br>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br>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국가유산청 자료</td></tr>
</table>

별표 2 제5호다목의 전수활동 기여도의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란 기호 (-) 전단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전승활동(15점)의 이수자 경력(5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이수자 경력(5점)</td><td>ㅇ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br>ㅇ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량평가<br>- 조사척도 : 정량평가<br><이수자 경력><br>
<table>
<tr><td>등급</td><td>SS<br>(매우탁월)</td><td>S<br>(탁월)</td><td>A<br>(우수)</td><td>B<br>(보통)</td><td>C<br>(다소미흡)</td><td>D<br>(미흡)</td><td>F<br>(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br>(12년 이상)</td><td>90%<br>(10년 이상)</td><td>80%<br>(8년 이상)</td><td>70%<br>(6년 이상)</td><td>60%<br>(4년 이상)</td><td>50%<br>(2년 이상)</td><td>40%<br>(2년 미만)</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국가유산청 행정포탈에 등록된 자료<br>ㅇ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br>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br>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국가유산청 자료</td></tr>
</table>

별표 2 제7호가목의 전승활동(15점)의 이수자 경력(5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이수자 경력(5점)</td><td>ㅇ 지표정의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br>ㅇ 측정산식 :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정량평가<br>- 조사척도 : 정량평가<br><이수자 경력><br>
<table>
<tr><td>등급</td><td>SS<br>(매우탁월)</td><td>S<br>(탁월)</td><td>A<br>(우수)</td><td>B<br>(보통)</td><td>C<br>(다소미흡)</td><td>D<br>(미흡)</td><td>F<br>(매우미흡)</td></tr>
<tr><td>환산율</td><td>100%<br>(20년 이상)</td><td>90%<br>(16년 이상)</td><td>80%<br>(13년 이상)</td><td>70%<br>(10년 이상)</td><td>60%<br>(7년 이상)</td><td>50%<br>(4년 이상)</td><td>40%<br>(4년 미만)</td></tr>
</table>
ㅇ 조사방법 : 제출된 자료 및 국가유산청 행정포탈에 등록된 자료<br>ㅇ 조사주안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br>ㅇ 보고서 작성방법 :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br>ㅇ 증빙 자료 : 제출된 자료, 국가유산청 자료</td></tr>
</table>

별표 2 제7호다목의 전수활동 기여도(10점)의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

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10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10점)</td><td>ㅇ 지표정의 :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br>ㅇ 측정산식 : 보유자가 조사대상자에게 평가한 결과를 정량평가<br>- 조사척도 : 정량평가<br><table><tr><td>등급</td><td>SS<br>(매우탁월)</td><td>S<br>(탁월)</td><td>A<br>(우수)</td><td>B<br>(보통)</td><td>C<br>(다소미흡)</td><td>D<br>(미흡)</td><td>F<br>(매우미흡)</td></tr><tr><td>환산율</td><td>100%<br>(95점 이상)</td><td>90%<br>(90점 이상)</td><td>80%<br>(85점 이상)</td><td>70%<br>(80점 이상)</td><td>60%<br>(75점 이상)</td><td>50%<br>(70점 이상)</td><td>40%<br>(70점 미만)</td></tr></table>ㅇ 조사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국가유산청이 정량평가 함<br>ㅇ 조사주안점 : 보유자의 평가 점수에 의거하여 정량평가<br>ㅇ 보고서 작성방법 : 보유자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하여 조사지표 평가서 작성<br>ㅇ 증빙 자료 : 보유자의 평가서</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첨 1의 Ⅰ의 제1호다목3)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첨 1의 Ⅱ의 제4호가목2)다)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

고, 같은 다) (2) 중 “문화재청에서”를 “국가유산청에서”로 한다.

별첨 1의 Ⅴ의 제2호2)다)(3)(나)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0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민제안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의 개정)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를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이”를 “국가유산청이”로 한다.

제2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우편발송/문화재청”을 “우편발송/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의 개정)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정)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청 담당과장”을 “국가유산청 담당과장”으로, “문화재청 안전기준”을 “국가유산청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재청 간행물관리 매뉴얼」”을 “「국가유산청 간행물관리 매뉴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재청과”를 “국가유산청과”로, “문화재청 발간”을 “국가유산청 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

산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을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의 표지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책등(옆면)의 구분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4 제1항 기관명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항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대상 기관(단체) | 수 량 | 유의사항 |
|---|---|---|---|
| 내부 기관 | - 문화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 소속 위원(전문위원 포함)<br>-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협의회·자문회·심의회 소속의 위촉위원<br>- 훈령 상 의무 배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궁·능·유적관리소)<br>- 문화유산 국민신탁, 아태무형유산센터, 문화유산감정관실, 한국의 집,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 | 기관 또는 개인 중 선택 1부 배포 | *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직원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배포 대상에서 제외(청장, 차장, 각 국장, 소속기관장, 각 실·과·팀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단, 발간 전·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직원 배포 가능<br><br>* 단체·개인 및 외부기관은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내용에 따라 발간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배포계획에 반영하되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체·개인 및 외부기관은 배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단체 개인 | - 국가유산지킴이 등 국가유산 관리 봉사자 또는 단체<br>- 국가유산청 주요 정책고객 중 문화유산상 수상자 또는 단체<br>- 국가유산청 조직발전에 공헌·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br>- 특정 단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국가유산 | | |

| | | | |
|---|---|---|---|
| |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개인(향토사학자, 연구자 등)<br>- 국가유산 관련 국내외의 학회·협회(법인) | | * 단체 또는 기관에 발간간행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소속의 직원 등 개인별 배포는 하지 않으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간행물코너의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도록 권장(원칙) |
| 외부 기관 |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br>- 문화체육관광부(기록관), 외교부재외공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연구기관<br>- 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관련 부서 또는 기록관<br>- 한국관광공사 등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 | |

별표 4 제3항나목의 도서관 박물관의 유의사항란 기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 (e-Book) 제작 기준”을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 (e-Book) 제작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제2호 10의 제작업체란 중 “납품처 또는 문화재청”을 “납품처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을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문화재청 감사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감사 규정”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의”을 “국가유산청의”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의 감사”를 “국가유산청의 감사”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을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으로,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

령에 따른 특수법인은”을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을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로,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을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에서”를 “국가유산청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 데이터”를 “국가유산청 데이터”로,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9조”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9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9조”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9조”로 한다.

제15조(「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공무원”을 “국가유산청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문화재청에”를 “국가유산청에”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문화재청 퇴직예정자”를 “국가유산청 퇴직예정자”로 한다.

제16조(「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7조(「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국정 및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국정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에”를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로,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를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문화재청 1차”를 “국가유산청 1차”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8조(「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란 국제교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9조(「(문화재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문화재청 기업”을 “국가유산청 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0조(「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을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8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으로, “문화재청 고객들”을 “국가유산청 고객들”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2조(「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3조(「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사이

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을 “국가유산청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로 한다.

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4조(「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을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 성과평가”를 “국가유산청 성과평가”로, “문화재청 조직역량”을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문화재청 공통”을 “국가유산청 공통”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 성과지표”를 “국가유산청 성과지표”로, “문화재청 각종”을 “국가유산청 각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5조(「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을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6조(「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제1호”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27조(「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을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8조(「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청 감사 규정」”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 감사담당부서”를 “국가유산청 감사담당부서”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의2호서식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0조(「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문화재청 행정규칙”을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1조(「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으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과”를 “국가유산청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 정보화를”을 “국가유산청 정보화를”로,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계획”을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0조제12호 및 제13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3조(「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을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청 업무”를 “국가유산청 업무”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4조(「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을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을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 본청”을 “국가유산청 본청”으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을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6조(「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을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통계총괄부서“는 국가유산청의 통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문화재청 통계협의회”를 “국가유산청 통계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는「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를 “경우에는「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7조(「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을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의”를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청 특사경 업무 인계·인수서”를 “국가유산청 특사경 업무 인계·인수서”로 한다.

제38조(「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9조(「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청 협업포인트”를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로, “문화재청 직원”을 “국가유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0조(「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

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8조”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8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4조”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7조”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7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20조”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20조”로 한다.

제41조(「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 명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 산하기관”을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 “문화재청에”를 “국가유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으로 한다.

제42조(「벽화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벽화문화유

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3조(「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로 한다.

제44조(「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청

제4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5조(「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8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23 비고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24 구분의 관리란 제12호 가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6조(「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청의 사무)”를 “(국가유산청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

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의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이”를 “국가유산청이”로, “문화재청은”을 “국가유산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6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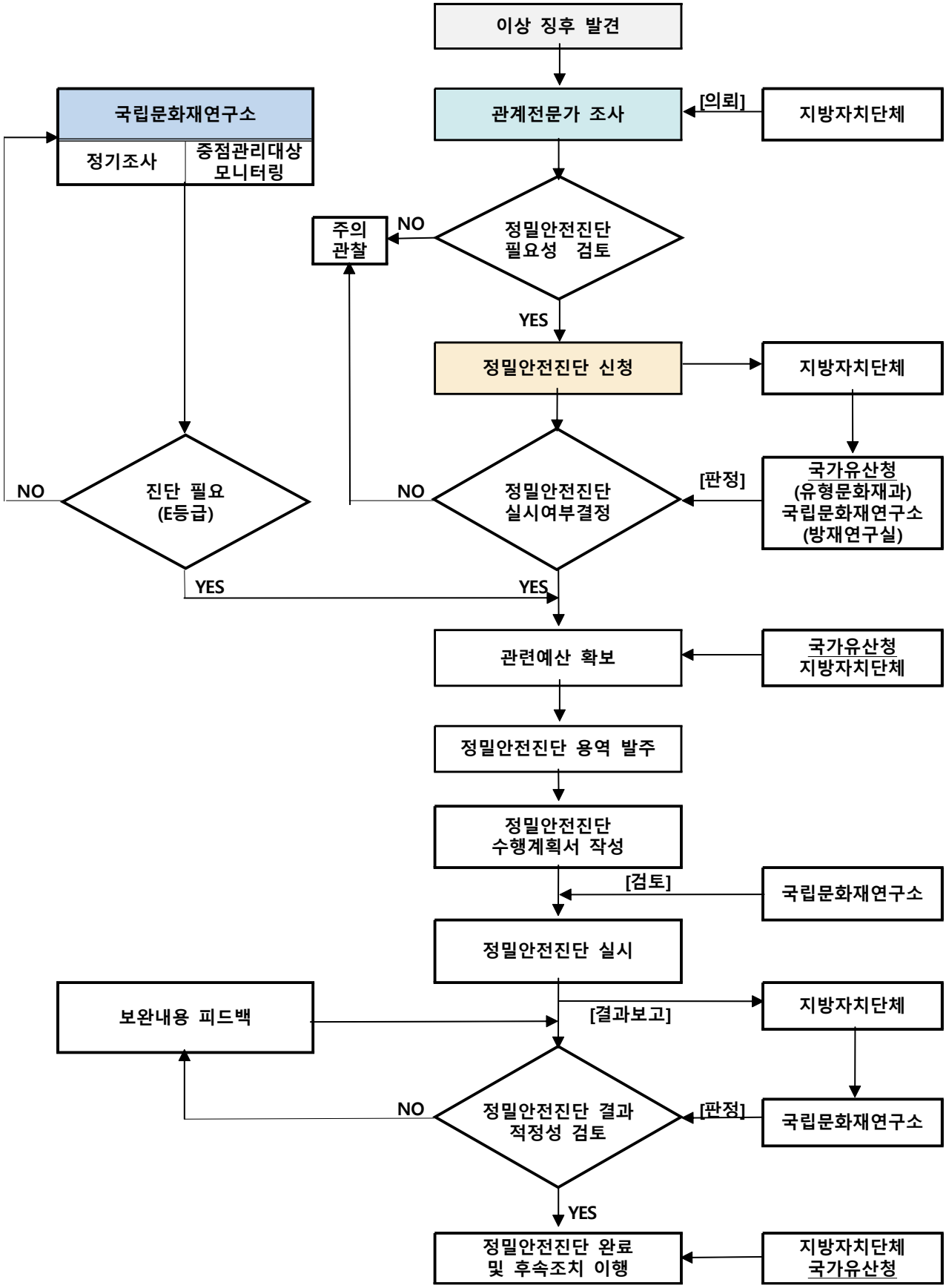

[별지 2]
[별표 2]

#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 업무순서 | 수행주체 | 업무내용 | 비고 |
|---|---|---|---|
| **건조물 문화유산에 이상 징후 또는 중대 결함 발견** | 소유자, 관리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전화, 메일, 민원 등 |
| 현지조사 의뢰 |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 조사보고서 작성 · 제출 | 보고서 자율양식 |
|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 자문회의 개최 |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결정 |
| **정밀안전진단 신청** | 지방자치단체→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원(안전방재연구실) | 문서 신청(조사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첨부) | |
|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국립문화재연구원(안전방재연구실) |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 자문위원회 개최 등 |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여부 판정 |
| 판정 결과 통지 | 국립문화재연구원→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터링, 주의관찰, 보수 필요 등 | |
| **관련예산 확보** | 국가유산청<br>지방자치단체 | 다음년도 예산 요구 및 배정 |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긴급보수비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 |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 계약 |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
|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 제출** | 안전진단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 현장 확인,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 |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원 |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 |
| 수행계획서 수정 · 보완 및 승인 | 국립문화재연구원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2~3회 |
|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 |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청 | 진단 보고서 및 설명자료 제출 | |
| **적정성 검토** | 국립문화재연구원 | 진단결과 심의(보수 필요시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결정 | 용역업체 브리핑 |
|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 국립문화재연구원→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 · 보완 요구 등 | 보완내용 피드백 |
|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 자치단체→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최종 파일 및 책자 제출 | |
| 후속조치이행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예산확보 및 시행 | 필요 시 응급조치 |

[별지 3]

**[별지 제1호 서식]**

#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문 화 재 청

#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국가유산청 전 공무원은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1. 우리는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서비스 이행표준

##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층별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기상황 발생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 - 0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2. 민원 접수 처리 기준

○ 민원은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한 경우에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사실을 SMS(단문서비스), E-mail(전자우편)로 즉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는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딱딱하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SMS, E-mail로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고객민원에 FAQ(자주 묻는 질문)를 운영하고, 반기 1회 이상 자료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7일)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정보화담당관) → 청구서 분류、이송(소관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는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서비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경우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고객께서 민원처리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객의 평가결과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포상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6.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7.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고객민원,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4]

[별표 1]

##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구성도 및 각 실무반의 역할(제12조 제4항 관련)

1.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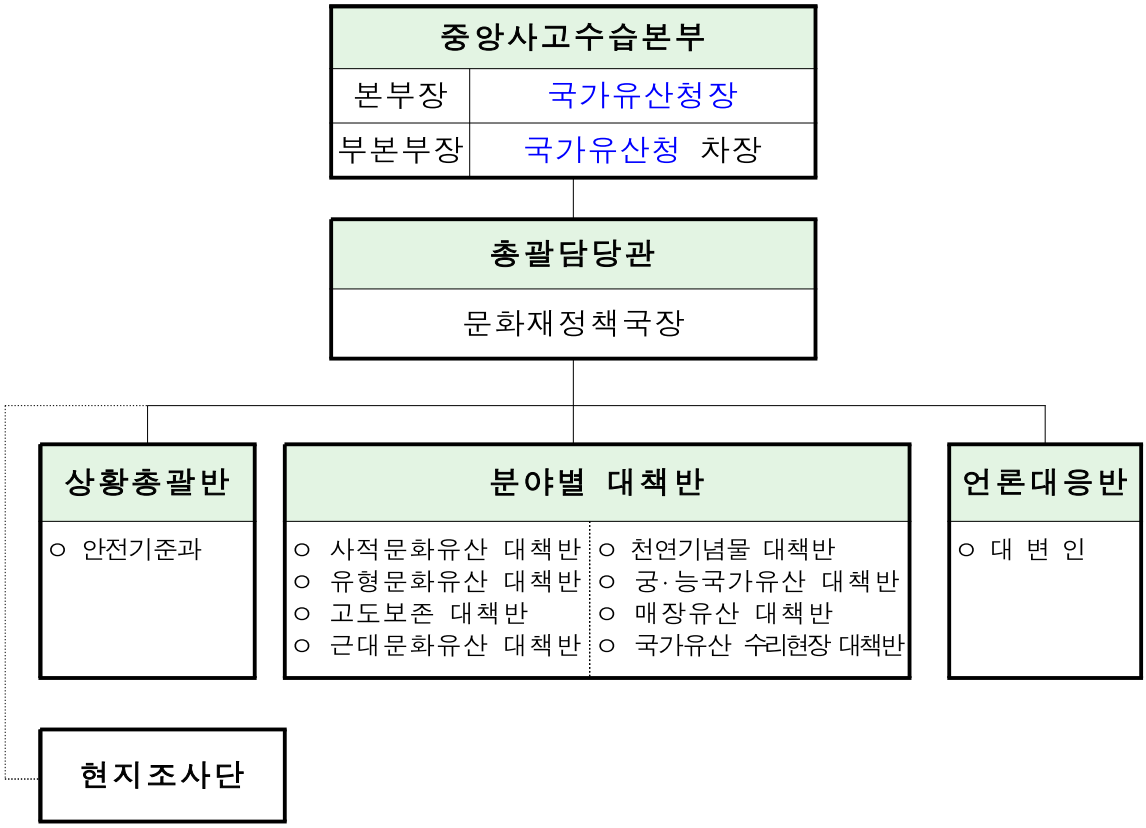


2.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 · 역할

가. 상황총괄반 및 언론대응반

| 구 분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상황<br>총괄반 | 반장 1<br>반원 2 | 1. 국가유산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br>2. 상황판단회의 주관<br>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br>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br>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 안전<br>기준과 |
| 언론대응반 | 반장 1<br>반원 1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br>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br>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대변인 |

나. 분야별 대책반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유형 및 기능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 구 분 |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분야별 대책반 | 사적 문화유산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사적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br>2. 재난피해 문화유산 응급복구 지원(돌봄사업단 이용)<br>3.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보존과 |
| | 유형 문화유산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유형과 |
| | 고도보존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고도지역 등 소관 국가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고도과 |
| | 근대 문화유산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가민속, 등록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유산 응급복구 지원<br>3.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근대과 |
| | 천연 기념물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천기,명승 등 소관 자연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 자연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천기과 |
| | 궁·능 국가유산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궁·능 등 소관 국가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국가유산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br>3.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복원과 |
| | 매장유산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매장 유산,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 매장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발굴과 |
| | 국가유산 수리현장 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가유산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수리과 |

[별지 5]

■ 국가유산청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국가유산청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면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국가유산청 본청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

2. **적극행정 면책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감사원이나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관계 등)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6]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전수교육학교사업 협약서

○ 학 교 명 :

○ 사업단명 :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국가유산청장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 이라 한다)

전수교육학교 사업수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총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전수교육학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의 수행)

총장 또는 학교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본 사업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년 월 일

2. 지급액 : 천원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1차 년도 이후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 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평가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결과보고)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매년 월 일까지 선정·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한 연차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 )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최종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용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용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국가유산청장은 총장 또는 학교장,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총장 또는 학교장의 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수교육학교 사업 수행상 국가유산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선정·평가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선정·평가규정 제15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수익금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선정·평가규정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총장 또는 학교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전수교육학교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국가유산청장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은 총장이 진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총장 또는 학교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선정·평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국가유산청(전담기관) 청장 : 직인

총장 또는 학교장(사업주관기관) : 직인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br>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시·도지사에게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br>④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 제5조(조사종목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 | 제5조(조사종목 공고)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 | |
|---|---|
| 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국가유산청----------.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조사자로 선정하 | ② 국가유산청장---------- |

| | |
|---|---|
| 여서는 아니 된다.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③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일부 또는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④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④ ---------- 국가유산청장에게 ---------- 국가유산청장은 ----------.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8조(조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방법) ① 국가유산청장----------.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 ③ 국가유산청장---------- |

| | |
|---|---|
| 실시하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조사 실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조사지표) ① 삭 제 | 제10조(조사지표) |
| ②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③ 조사지표 중 실기능력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의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적용되는 | ④ ---------- |

| | |
|---|---|
|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는 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이 정하여 적용하며 지정 후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 ---------- 국가유산청장-------. |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 국가유산청장----------.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3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조사결과의 점수를 위원회의 심의 용도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4조(심의안건 상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조사결과를 위 | 제14조(심의안건 상정)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2조의 조사결과는 구간별 점수로 환산하여 제출할 수 있다.<br>③ 문화재청장은 조사결과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 ----------.<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 |
| 제15조(위원회 심의) ① (생 략)<br><br>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 제15조(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장----------. |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옛문서·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 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br>② (생 략) |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 |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신청자의 기본 소양을 제고하고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br>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시간, 이수내용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5조(교육)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 국가유산청장-----. |
| 제6조(위촉절차) ① (생 략)<br>② 문화재청장은 신청인의 활동 대상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위촉한다.<br>③ (생 략) | 제6조(위촉절차) ①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현행과 같음) |
| 제8조(위촉취소) ① (생 략)<br>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국가유산지킴이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취소) ①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장----------. |

| | |
|---|---|
| 제9조(활동 윤리)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br>1. ~ 9. (생 략)<br>10. 국가유산 훼손, 도난, 피해 우려 발견 시 문화재청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즉시 알린다. | 제9조(활동 윤리) ----------.<br>1. ~ 9. (현행과 같음)<br>10. ---------- 국가유산청----------. |
| 제11조(활동 대상 국가유산) ①·② (생 략)<br>③ 국가유산지킴이 한 사람이 한 개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활동 대상 국가유산)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 |
| 제12조(우수활동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의 우수활동 프로그램을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활동 지원) 국가유산청장----------. |
| 제13조(활동결과 보고서) ①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단체는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수 있 | 제13조(활동결과 보고서) ① ---------- 국가유산청---------- |

| | |
|---|---|
| 다.<br>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가운데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에 공지할 수 있다. | --.<br>② 국가유산청장----------. |
| 제14조(재정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의 활동사례 공유, 교류협력 증진 등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② (생 략)<br>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① 국가유산청장----------.<br>② (현행과 같음)<br>③ 국가유산청장----------. |
| 제15조(모니터링) 문화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모니터링) 국가유산청장----------. |
| 제16조(지킴이 활동) ① 문화재청장은 국민의 국가유산지킴이활 | 제16조(지킴이 활동)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유산지킴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국가유산지킴이의 날과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을 정할 수 있다. | ----------. |
|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국가유산지킴이의 날과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 교육, 홍보 활동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 제17조(포상)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보호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국가유산지킴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국가유산청장----------. |

#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br>② (생 략)<br>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br>④ (생 략) | 제2조(구성) ①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br>④ (현행과 같음) |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br>1. ~ 3. (생 략)<br>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제5조(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산청----------.<br>1. ~ 3. (현행과 같음)<br>4. ---------- 국가유산청----------. |
|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br>1.·2. (생 략)<br>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문화재청장(국립문화재연구원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br>1.·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장---------- |

| | |
|---|---|
| 따라 조치한다. | ----------.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② ---------- 국가유산청---------- ---. |
| ③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유산 수리 등 각종 보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 -------. |
| 제7조(정기점검) ① (생 략) | 제7조(정기점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 -- 국가유산청----------.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8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문화재청과 지방자 | 제8조(특별점검) ① ---------- ----------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 국가유산청과 지방 |

| | |
|---|---|
| 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br>② (생 략) | 자치단체는 ----------.<br>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점검 후 조치) ① (생 략)<br><br>②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후 조치)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장----------. |
|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br>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청에서 배포한「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br>② ---------- 국가유산청 ----------. ----------.<br>③ 국가유산청장 ---------- |

| | |
|---|---|
| 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④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 ----------. |
|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 |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 |

| | |
|---|---|
| 결과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유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br>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br>2. (생 략)<br>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에 통지<br>③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 ---- 국가유산청장 ----------. |
|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생 략)<br>②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 ② ----------.<br>1. ---------- 국가유산청----------<br>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 ----------<br>③ 국가유산청장----------. |
|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현행과 같음)<br>② ----------. ---------- 국가유산청 ---------- | |

| | |
|---|---|
| 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 ③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문화재청장이 재해·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4. 국가유산청---------- |
| 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국가유산청 ----------. |
|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 | 3. ---------- 국가유산청----------. ---------- |

| | |
|---|---|
| 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조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 국가유산청----------. |
| ② 문화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이 문화재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 | 2. ---------- 국가유산청장---------- |

| | |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5. 문화재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산 | 5. 국가유산청장---------- |
| ②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
|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 ③ (생 략) |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국가유산청장 ----------. |
|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생 략) |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 |
|---|---|
| ②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③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
|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생 략) |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 | 4.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이 ---------- |

| | |
|---|---|
|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수립된 계획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배포하여야 한다. | 3. ---------- 국가유산청----------. |
| 4.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 | 4. 국가유산청----------. |
| 5.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 5. 국가유산청----------. |

#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 국가유산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생 략) |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 ② ---------- |

| | |
|---|---|
|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도, 문화재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4. ----------국가유산청----------.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해지)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 4. ----------국가유산청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br>1.·2. (생 략)<br>② (생 략) | 제4조(회의자료 공개) ① ---------- 국가유산청 ----------.<br>1.·2.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br>② ~ ⑤ (생 략) |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국가유산청 ----------. ----------.<br>② ~ 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공항 및 무역항 등에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br>2.·3. (생 략)<br>4. 문화재청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란 감정관실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과장을 의미한다. | 제2조(정의) ----------.<br>1. ----------국가유산청장----------.<br>2.·3. (현행과 같음)<br>4. 국가유산청 담당과장----------국가유산청 안전기준----------. |
| 제3조(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유산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공항 및 무역항 등에 감정관실을 설치하여 | 제3조(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운영한다.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4조(감정위원의 배치) ① 문화재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감정위원의 배치) ① 국가유산청장----------. ---------- --. |
| ② 문화재청장은 운항편수, 운항일, 운항시간 등 공항 및 무역항 등의 운영사항 변동과 감정물량 및 감정분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제4조의2(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 ①·② (생 략) | 제4조의2(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비상근 감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2. ---------- 국가유산청----------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문화재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국가유산청장---------- |

| | |
|---|---|
|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 |
| 제15조(주간 근무시간 편성) ① (생 략)<br>② 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의1서식에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u>문화재청</u>에서 지정한 출퇴근 기록 온라인 시스템에 출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br>③·④ (생 략) | 제15조(주간 근무시간 편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 <u>국가유산청</u>----------.<br>③·④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간행물”이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연구・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국가유산대관・연감・백서・도록・통계・연혁집・사료(史料)집・법규집・표준품셈 등을 말한다. | 1. --------- 국가유산청----------. |
| 2. “발간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해 | 2. --------- 국가유산청---------- |

| | |
|---|---|
| 당 기관 자체를 발간부서로 본다. | ----------.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행물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 간행물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③ ----------「국가유산청 간행물관리 매뉴얼」-------. |
|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 ~ ③ (생 략) |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문화재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 ④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 발간 ----------. |
| ⑤ 발간부서명은 문화재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⑤ ---------- 국가유산청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② (생 략) |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 | ③ 국가유산청----------. ---------- |

| | |
|---|---|
| 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br>④ (생 략)<br>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문화재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br>⑥ 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PDF 파일을 별표 5의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한 간행물, 발간간행물의 저작권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간행물, 비공개를 전제로 발간한 간행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① ~ ③ (생 략)<br>④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문화재청 행정포탈(간행물 |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 국가유산청 ---------- |

| | |
|---|---|
|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 |
| 제14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② (생 략) | 제14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문화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국가유산청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책무) ① 문화재청장은 소관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br>③ 문화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책무)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 |

| | |
|---|---|
|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br>1. ~ 4. (생 략)<br>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br>② (생 략) |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국가유산청 ----------.<br>1. ~ 4. (현행과 같음)<br>5.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국가유산청----------.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br>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br>1.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장----------.<br>1. (현행과 같음) |

| | |
|---|---|
| 2. 문화재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 2. 국가유산청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기타 선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 |
|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문화재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13조(수당 등) ① (생 략) | 제13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 ② ---------- |

| | |
|---|---|
| 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문화재청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감사 규정 |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화재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의 본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의 감사----------. |
| 제1조의2(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br>1.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br>2. (생 략)<br>3. 제2호 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br>② (생 략) | 제1조의2(감사 대상) ① ----------.<br>1. 국가유산청 -------<br>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 |
|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생 략)<br>② 종합감사는 문화재청 본청과 |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 |

| | |
|---|---|
|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피감사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 기타공공기관은 2년으로 하며, 그 외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 ----------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복무감사는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비위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장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⑤ -------- 국가유산청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 |
|---|---|
| 제7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br>1. (생 략)<br>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br>3. (생 략) | 제7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br>1. (현행과 같음)<br>2. ----------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br>3. (현행과 같음) |
|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② (생 략)<br>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④ (생 략) |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장----------.<br>④ (현행과 같음) |
|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 결과는 감사결 |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 |

| | |
|---|---|
| 과 보고 후 1개월 이내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생 략) | ---------- 국가유산청 ----------. ----------.<br>② (현행과 같음) |
| 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 제33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br>①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br>② (생 략)<br>③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br>1. 문화재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br>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 | 제33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br>①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1. 국가유산청 ----------<br>2. ---------- |

| | |
|---|---|
| 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및 유관업계 전문가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 국가유산청장----------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3조(업무범위)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 5. (생 략)<br>6. 삭 제<br>7. 기타 문화재청의 일반현황 등 안내 | 제3조(업무범위) ----------.<br>1. ~ 5. (현행과 같음)<br>7. --- 국가유산청---------- |
|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 (생 략)<br>② 상담원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문화재청 각종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 |

| | |
|---|---|
| 정보의 유출 또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문화재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시행 | 제3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

| | |
|---|---|
| 한다.<br>② (생 략)<br>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 ③ (생 략)<br>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br>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br>1. ~ 4. (생 략)<br>5.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br>② (현행과 같음)<br>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 국가유산청 ----------.<br>제10조(준용규정) ----------.<br>1. ~ 4. (현행과 같음)<br>5.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문화재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문화재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 1.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에서 ----------. |
| 2. ~ 11. (생 략) | 2. ~ 11. (현행과 같음) |

| | |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청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br>② 국가유산청장----------. |
|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재청장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③ 문화재청장은 연계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br>④ 문화재청장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br>⑤ 문화재청장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 |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br>④ 국가유산청장----------.<br>⑤ 국가유산청장---------- |

| | |
|---|---|
| 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제5조(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① 문화재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 제5조(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① 국가유산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국가유산청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 국가유산청----------.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제14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제13조에 따라 정의된 문화재청 데이터 표준은 문화재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 국가유산청 데이터 -- 국가유산청의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6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과 협조하여 다 | 제16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 |

| | |
|---|---|
|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br>1. ~ 6. (생 략)<br>② (생 략) | ---------- 국가유산청 ----------.<br>1. ~ 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20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br>1. 문화재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br>2.·3. (생 략)<br>② (생 략) | 제20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br>1. 국가유산청 ----------<br>2.·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문화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직무관련자“란 문화재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1. ---------- 국가유산청공무원----------. |
| 가. ~ 자. (생 략) | 가. ~ 자. (현행과 같음) |
| 차. 그 밖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차. ----- 국가유산청---------- |

| |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문화재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국가유산청 소속 ---------- 국가유산청에 ----------. |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② (생략)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 | ③ ---------- |

| | |
|---|---|
| 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br>1. ~ 8. (생 략)<br>9.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br>1. ~ 8. (현행과 같음)<br>9. ------ 국가유산청장---------- |
|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 5. (생 략)<br>② 문화재청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br>1. ~ 3. (생 략) |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국가유산청 ----------.<br>1. ~ 5.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br>1. ~ 3. (현행과 같음) |
|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 략)<br>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

| | |
|---|---|
| 아니한다.<br>1.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br>2. ~ 8. (생 략)<br>④ ~ ⑥ (생 략) | ------.<br>1. 국가유산청장----------<br>2. ~ 8. (현행과 같음)<br>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 국가유산청 ----------. |
|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 |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 |

| | |
|---|---|
| 를 수행한다.<br>1. 문화재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br>2.·3. (생 략)<br>② 삭 제<br>③ (생 략) | --------.<br>1. 국가유산청----------<br>2.·3. (현행과 같음)<br><br>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소속기관 및 산하기간을 포함한다)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제5조(책무) ①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 | |
|---|---|
|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생 략)<br>2. 문화재청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br>3.·4. (생 략)<br>③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현행과 같음)<br>2. 국가유산청----------<br>3.·4.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② (생 략)<br>③ 문화재청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br>④ ~ ⑧ (생 략) |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국가유산청----------. ----------.<br>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문화재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 |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 국가유산청---------- |

| | |
|---|---|
| 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문화재청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국가유산청 ----------. |
| ② 문화재청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② 국가유산청----------.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국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 |
| 제2조(구성) ① ~ ⑤ (생 략) | 제2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문화재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소속기관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가유산청 1차 ---------- 국가유산청장----------. |
| 제3조(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심의사항 등) ①----------. |
| 1.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중 | 1. 국가유산청 ---------- |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처분결정 여부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외국 정부기관 등과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외국기관 간 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 6. ---------- 국가유산청----------. |
| 7.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란 국제교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재청과 그 | 7.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란 국제교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 |

| | |
|---|---|
|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 |
| 제4조(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구성) ① (생 략)<br>② 협의회 운영 주관부서는 국제협력과로 하고, 참석대상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국제교류 담당부서 및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한다. | 제4조(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 |
| 제10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수행) ① ~ ③ (생 략)<br>④ 문화재청 예산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br>⑤ (생 략) | 제10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수행)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국가유산청 ----------.<br>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br>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br>운영규정 | 국가유산청<br>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br>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의 ---------- 국가유산청 기업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 | 제2조(정의) ----------.<br>1. ---------- 국가유산청---------- |

| | |
|---|---|
| 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br>2. ‘기업고객’이라 함은 문화재청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br>3. (생 략)<br>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현장 이행기준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br>2. ---------- 국가유산청 ----------.<br>3. (현행과 같음)<br>4. ---------- 국가유산청 ----------. |
|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대상) ------- 국가유산청 ----------. |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생 략)<br>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2서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br>③ (생 략)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장 ----------.<br>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데이터 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 | 2. ---------- 국가유산청---------- |

| | |
|---|---|
| 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8. “데이터관리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통해 또는 데이터분석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 8. ---------- 국가유산청----------. |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빅데이터(이하 “데이터 등” 이라 한다), 공공데이터의 연계·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 총괄책임관을 둔다. |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
| 1. 문화재청 데이터 등의 업무와 예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 1. 국가유산청 ---------- |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 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디지털문화유산팀장”으로 하며, | 제5조(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 ① ---------- |

| | |
|---|---|
|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 7. (생 략)<br>8. 그 밖에 문화재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br>② (생 략) | ----------.<br>1. ~ 7. (현행과 같음)<br>8. ----- 국가유산청 ----------<br>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br>② 문화재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br>③ 문화재청장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④ 문화재청장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br>④ 국가유산청장----------. |
| 제8조(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 제8조(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 |

| | |
|---|---|
| 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 |
| ② 문화재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제10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부서의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 종합관리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1조(데이터 제공) ① 문화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데이터 제공)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2조(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② (생 략) | 제12조(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문화재 | ③ ---------- 국가유 |

| | |
|---|---|
| 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의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청----------. |
|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br>④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br>1.·2. (생 략)<br>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자<br>⑤ (생 략) |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1.·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장----------<br>⑤ (현행과 같음) |
| 제19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 ③ (생 략)<br>④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과 데이터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 국가유산청장----------. |

#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국가유산청 고객들----------.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 제2조(정의) ----------.<br>1. ---------- 국가유산청---------- |

| | |
|---|---|
|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br>2. ‘고객’이라 함은 문화재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br>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br>2. ---------- 국가유산청----------.<br>3. ---------- 국가유산청 ----------. |
|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대상) ------- 국가유산청 ----------. |
|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br>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br>1.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한다.<br>2. 위원 중 공무원은 문화재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br>3.·4. (생 략)<br>③·④ (생 략) |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 국가유산청 ------.<br>2. ---------- 국가유산청 ----------.<br>3.·4. (현행과 같음)<br>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4조(민원심사관 지정)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 제14조(민원심사관 지정) ①---------- |

| | |
|---|---|
| 문화재청 민원심사관은 법무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과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국·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 제2조(정의) ① (생 략)<br>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br>1. 문화재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br>2.·3. (생 략) |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br>② ----------. ----------.<br>1. 국가유산청----------<br>2.·3.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
| 제4조(조직) ①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br>② (생 략)<br>③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 제4조(조직) 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청 정보화담당관----------.<br>② (현행과 같음)<br>③ ---------- |

| | |
|---|---|
|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1. (생 략)<br>3. 업체 인원에 대하여「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26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등 준용<br>4. (생 략)<br>제26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br>1.·2. (생 략)<br>3.「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br>4. (생 략) | ----------.<br>1.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br>4. (현행과 같음)<br>제26조(준용 규정) ----------.<br>1.·2. (현행과 같음)<br>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br>4.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확산시켜 문화재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국가유산청 조직역량----------.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성과평가"란 문화재청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 2. --------- 국가유산청 ----------.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9. "성과지표 풀" 이란 문화재청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성과지표들의 모음을 말한다. | 9. ---------- 국가유산청 ----------.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 |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라 시행되는 성과평가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은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② 문화재청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국가유산청 ----------.<br>② 국가유산청----------. |
| 제4조(평가의 종류) 문화재청 성과평가는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 제4조(평가의 종류) 국가유산청 ----------. |
| 제6조(조직성과평가 항목) ① 문화재청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 평가계획에 의한 주요정책과제 평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고유과제 평가, 문화재청 공통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공통과제 평가, 혁신과제 발굴 및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혁신과제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br>② (생 략) | 제6조(조직성과평가 항목) ① 국가유산청의 ---------- 국가유산청 공통----------.<br>② (현행과 같음) |

| | |
|---|---|
| 제7조(성과지표 풀 구축·관리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의 비전 및 임무,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설정한 문화재청 성과지표 풀을 구축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문화재청 성과지표 풀은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br>③ 문화재청 성과지표 풀은 주요정책과제 평가, 고유과제 평가 등 문화재청 각종 성과평가에 사용한다.<br>④·⑤ (생 략) | 제7조(성과지표 풀 구축·관리 등) ① ---------- 국가유산청 ----------.<br>② ---------- 국가유산청 ----------.<br>③ 국가유산청 성과지표 ---------- 국가유산청 각종 ----------.<br>④·⑤ (현행과 같음) |
| 제10조(조직성과평가 실시) ① (생 략)<br>②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br>1.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br>2. ~ 5. (생 략)<br>③ (생 략) | 제10조(조직성과평가 실시)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 국가유산청 ----------.<br>2. ~ 5.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제12조(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①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과 문화재청 | 제12조(조직성과평가결과 반영) ① ---------- 국가유산 |

| | |
|---|---|
|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연구관 포함/이하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반영한다. | 청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4조(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 제14조(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
|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①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문화재청 성과지표 풀 확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국가유산청 ----------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5조(성과평가반 구성) ① (생략) | 제15조(성과평가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성과평가반은 기획조정관을 평가총괄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고유과제 평가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성과평가반원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6조(조직성과평가의 예외) ① (생 략) | 제16조(조직성과평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
| ② 책임운영기관군, 특정직군의 조직성과평가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체 규정 | ② ----------. ---------- |

| | |
|---|---|
| 개정 시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br>③ (생 략)<br>제17조(개인성과평가 대상) 개인성과평가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5급 이하 공무원은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국가유산청-------.<br>③ (현행과 같음)<br>제17조(개인성과평가 대상) ---------- 국가유산청 소속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

#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재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 1. ---------- 국가유산청 ----------. |
|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재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 2. ---------- 국가유산청 ----------. |

| | |
|---|---|
|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문화재청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3. ---------- 국가유산청 ----------. |
| 4. “소관부서의 장”이란 문화재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 국가유산청 ----------.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 ----------. |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4. (생 략)<br>5. “국가유산 재난피해”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유산 시설 등 문화재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2조(정의) ----------.<br>1. ~ 4. (현행과 같음)<br>5. ---------- 국가유산청 ----------. |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 |
|---|---|
| 는 국가유산 재난피해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 ----------. |
| 제5조(상황실의 구성) ① (생 략) | 제5조(상황실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국가유산 재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과 직원 이외의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황실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 국가유산청 ----------. |
| 제7조(상황관리 체계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상황관리 체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③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3조제1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3장 문화재청 | 제3장 국가유산청 |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 제10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문 | 제10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 국 |

| | |
|---|---|
| 화재청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br>1.·2. (생 략)<br>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유산청 ----------.<br>1.·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장---------- |
| 제12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br>1. 수습본부장은 문화재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br>2. 부본부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br>3.·4. (생 략)<br>② ~ ④ (생 략) | 제12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br>1. ---------- 국가유산청장----------.<br>2. -------- 국가유산청 ----------.<br>3.·4.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5조(지역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국가유산 재난피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br>②·③ (생 략) | 제15조(지역수습본부 운영) ① ---------- 국가유산청----------.<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9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에서 근무 | 제19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국가유산청 ---------- |

| | |
|---|---|
| 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br>②·③ (생 략) | ----------.<br>②·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
|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 제2조(대상기관) ---------- 국가유산청 ----------. |
|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생 략) |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②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구성) ①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 |
| ②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 ----------. |
|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기능)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3. 국가유산청장 ---------- |
| 제4조(회의) ① (생 략) | 제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 국가유산청장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5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국가유산청장----------. |
|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문화재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 략)<br>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 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br>3.·4. (생 략) | 제2조(정의) ----------.<br>1. (현행과 같음)<br>2. ----------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br>3.·4. (현행과 같음) |
| 제7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문화재청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 | 제7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국가유산청 감사담당부서---------- |

| | |
|---|---|
| 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문화재청 본청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 3.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 | |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문화재청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장----------. |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br>③ 청장은 참고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청 소속기관(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br>④·⑤ (생 략)<br>⑥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 ----------. ----------.<br>④·⑤ (현행과 같음)<br>⑥ ---------- 국가유산청---------- |

| | |
|---|---|
| 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 제7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영 제11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 국가유산청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정부위원)과 민간인(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은 문화재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감사기구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 ⑤ ----- 국가유산청----------.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
|---|---|
|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문화재청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 ---------- 국가유산청----------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영 제18조의2에 따라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 국가유산청장----------.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영 제18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문화재청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 국가유산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03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1.·2. (생 략)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br>1.·2.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용 범위) ------- 국가유산청 ----------. |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br>1.·2. (생 략)<br>②·③ (생 략)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br>1.·2.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 | |
|---|---|
|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br>① (생 략)<br>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br>1. ~ 3. (생 략) |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br>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장----------.<br>1. ~ 3. (현행과 같음) |
|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국가유산청장----------. |
|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② (생 략)<br>③ 문화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④ (생 략) |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국가유산청장----------.<br>④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문화재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br>② 문화재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br>③ (생 략) |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과 ---------- "국가유산청"----------.<br>② 국가유산청----------.<br>③ (현행과 같음)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 5. (생 략) | 제3조(용어의 정의) ----------.<br>1. ~ 5. (현행과 같음) |

| | |
|---|---|
| 6. “정보화총괄부서”란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 | 6. ---------- 국가유산청 ----------. |
| 7. “정보화사업부서”란 문화재청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 국가유산청 ----------. |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재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국가유산청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 ③ ----------. |
| 1.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국가유산청 ---------- |

| | |
|---|---|
| 2. 문화재청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국가유산청 ----------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재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문화재청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제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 ① (생 략) | 제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보화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 ② ---------- |

| | |
|---|---|
| 토하여야 한다.<br>1. 문화재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br>2.·3. (생 략) | ----------.<br>1. 국가유산청 ----------<br>2.·3. (현행과 같음) |
|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문화재청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br>② (생 략) |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국가유산청 ----------.<br>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 제19조(정보통신망 설치·운영) ①·② (생 략)<br>③ 정보통신망 설치·운영에 따른 보안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제19조(정보통신망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 제24조(국가유산정보의 공개·제공)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재청이 보유한 국가유산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공개·제공하여야 한다.<br>② (생 략) | 제24조(국가유산정보의 공개·제공) ① ----------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 |

| | |
|---|---|
|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③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 제25조(EA 관리 및 현행화)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EA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br>1. 문화재청 EA 기획 및 수립<br>2. 문화재청 EA 현행화(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영역의 현행과 목표, 이행과제 등) 및 품질관리<br>3. 문화재청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br>4. 문화재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br>②·③ (생 략) | 제25조(EA 관리 및 현행화) ① ----------.<br>1. 국가유산청 ----------<br>2. 국가유산청 ----------<br>3. 국가유산청 ----------<br>4. 국가유산청 ----------<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br>1. ~ 11. (생 략)<br>12.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br>13.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br>14. (생 략) |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br>1. ~ 11. (현행과 같음)<br>12. 국가유산청 ----------<br>13. 국가유산청 ----------<br>14.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br>1. 포괄 정책연구비 : 문화재청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정책국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br>2. (생 략)<br>② (생 략) | 제3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br>1. ---------- 국가유산청----------<br>2.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정책국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문화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 |
| 1. 당연직 위원 : 문화재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1. --------- 국가유산청 소속 ---------- 국가유산청장---------- |
| 2. 위촉직 위원 : 문화재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고 한다) | 2. --------- 국가유산청 업무 ---------- 국가유산청장---------- |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 제7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② (생 략) | 제7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각 국·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국·관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해당 국·관 또는 소속기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 | ③ ---------- 국가유산청 |

| | |
|---|---|
| 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br>④ ~ ⑥ (생 략) | 장----------.<br>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③ (생 략) |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 국가유산청 ----------. ----------.<br>②·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구성) ①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 |
| ② 민간위원은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 ② --------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 국가유산청장-------.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국가유산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 |
|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 (생 략) |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 (현행과 같음)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 | ② 국가유산청장---------- |

| | |
|---|---|
|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br>② (생 략) |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본청----------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br>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 국가유산청----------. |
|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생략)<br>② 외부위원은 문화재청 소관 |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소관 |

| | |
|---|---|
|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국가유산청장 ----------. |
| ③ 내부위원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부서장급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 국가유산청 ----------. |
| 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 | ④ ---------- 국가유산청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통계관리규정 |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통계“란 문화재청장이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정하는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 1. ------ 국가유산청장----------.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 |
|---|---|
| 4.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재청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4. ---------- 국가유산청 ----------. |
| 5. “통계총괄부서“는 문화재청의 통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 5. “통계총괄부서“는 국가유산청의 통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통계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통계사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문화재청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통 | 제6조(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국가유산청 소관 ---------- 국가유산청 통 |

| | |
|---|---|
| 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계협의회----------.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제7조(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7조(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② 통계책임관은 국가유산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9조(통계교육) ① (생 략) | 제9조(통계교육) ① (현행과 같음) |
|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 및 문화재청 통계책임관이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제13조(통계의 공표) ① (생 략) | 제13조(통계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
|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작성결과를 등록한다. | ② ---------- 국가유산청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8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 제18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

| | |
|---|---|
| ①·② (생 략)<br>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br>⑤ ~ ⑦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br>④ ---------- 경우에는「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br>⑤ ~ ⑦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
| 제3조(특사경의 직무) ①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1호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br>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와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br>③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 제3조(특사경의 직무) ① 국가유산청 ----------.<br>②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의 ----------.<br>③ 국가유산청 ---------- |

| | |
|---|---|
| 한다. | ---. |
| 제4조(조직 등) ① 국가유산사범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다.<br>②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받아야 한다. | 제4조(조직 등) ① ---------- ----------- 국가유산청 ---------- ----------.<br>② 국가유산청 ---------- ----------. |
| 제5조(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① (생 략)<br>②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조사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 ---------- ----------. ---------- ----------. |
| 제6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임명된 5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 제6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
| ② ~ ④ (생 략)<br>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정책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br>제20조(운영세칙) ---------- 국가유산청 ----------. |

# 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br>② (생 략) |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br>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 | |
|---|---|
| 서의 장이 참석한다.<br>② (생 략) | ----------.<br>② (현행과 같음) |
| 제8조(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공모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한다.<br>1. 문화재청 지식발굴대회<br>2. 문화재청 정책 아이디어 내·외부 공모<br>3.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 - 문화재청 지식관리시스템 - 아이디어 게시판)<br>② ~ ⑤ (생 략) | 제8조(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① ----------.<br>1. 국가유산청 --------<br>2. 국가유산청 ----------<br>3. ---------- 국가유산청 ----------<br>② ~ 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 3. (생 략)<br>4. '특별협업포인트'는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문화재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 제2조 (정의) ----------.<br>1. ~ 3. (현행과 같음)<br>4. ----------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 국가유산청 직원 ----. |
|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지원인력으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 제3조 (적용대상) ------- 국가유산청 ---------- |

| | |
|---|---|
| 직원에게 적용한다. | ----------. |
|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문화재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국가유산청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생 략) |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② 협업포인트는 문화재청 직원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 ② ---------- 국가유산청 ----------. ----------. |
|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문화재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 국가유산청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조 (성과평가에 활용)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 | 제12조 (성과평가에 활용) ---------- |

| | |
|---|---|
| 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재청 성과평가의 부서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 국가유산청 ----------. |
| 제13조 (재검토 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 |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홈페이지”란 문화재청이 인터넷상에서 각종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 | 1. --------- 국가유산청----------.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 “이용자”란 문화재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4. -------- 국가유산청----------.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 | |
|---|---|
| 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 |
| 제9조(홈페이지 구축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br>1. 문화재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업무표장 등을 포함<br>2. ~ 9. (생 략) | 제9조(홈페이지 구축 시 유의사항) ----------.<br>1. 국가유산청 ----------<br>2. ~ 9. (현행과 같음) |
| 제14조(홈페이지 폐기) ①·② (생 략)<br>③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br>1.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중단 예정일 15일 전부터 30일간 안내<br>2. (생 략) | 제14조(홈페이지 폐기)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1. ---------- 국가유산청 ----------<br>2. (현행과 같음) |
| 제23조(행정정보 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br>② (생 략) | 제23조(행정정보 제공) ① ----------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br>② (현행과 같음) |
| 제26조(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①·② (생 략) | 제26조(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 ③ 그 밖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관리한다. | ③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재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명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 |
| 제4조(승인대상 행사)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유산청장---------- |

| | |
|---|---|
|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 국가유산청 ----------.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문화재청 산하기관 또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문화재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 ②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 국가유산청에 ---------- |
| ③ 문화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 ③ 국가유산청 ---------- |
| ④ 법령에서 문화재청 지원을 정한 행사 | ④ ------ 국가유산청 ---------- |
| ⑤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⑤ -- 국가유산청장---------- |
|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
|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 국가유산청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 |

| | |
|---|---|
|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 ⑧ (생 략) | ----------국가유산청----------.<br>② ~ ⑧ (현행과 같음) |
|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1. ~ 4. (생 략)<br>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보고 등) ① ----------국가유산청장----------.<br>1. ~ 4. (현행과 같음)<br>② ----------국가유산청장----------. |
|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문화재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국가유산청 ----------. |

#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 7. (생 략)<br>8. “감독기관”이란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br>9. (생 략) | 제2조(정의) ----------.<br>1. ~ 7. (현행과 같음)<br>8. ---------- 국가유산청----------.<br>9. (현행과 같음) |

#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문화재청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 2. ---------- 국가유산청 ----------. |
|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 |
| 가. 삭 제 | |
| 나. 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국가유산청---------- |
| 다. 문화재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다. 국가유산청 ----------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

| | |
|---|---|
| 이 겸임한다.<br>②·③ (생 략) | --------.<br>②·③ (현행과 같음) |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br>② 직위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br>1. 문화재청<br>2.·3. (생 략)<br>③·④ (생 략) | 제3조(구성) ① ---------- 국가유산청장-------.<br>② ----------.<br>1. 국가유산청<br>2.·3. (현행과 같음)<br>③·④ (현행과 같음) |
| 제4조(간사)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직원이 한다. | 제4조(간사) ---------- 국가유산청 -------. |

#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조경관리) ① (생 략)<br><br>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은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br>1. ~ 6. (생 략) | 제11조(조경관리)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국가유산청----------. ----------.<br>1. ~ 6. (현행과 같음) |
| 제38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37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8조(촬영허가 신청방법) ---------- 국가유산청 ----------. ----------. |
| 제48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8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 국가유산청 ----------. |

| | |
|---|---|
| 제54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유적관리소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 제54조(장소사용요금 면제) ----------.<br>1.·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장 ---------- |

#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시관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 관리,출납담당자의 직,성명 및 별지 제2호의 유물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국가유산청장----------.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 (생 략)<br>4. “국고지원금”이란 문화재청이 전수교육학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br>1. ~ 3. (현행과 같음)<br>4. ---------- 국가유산청 ----------. |
| 제4조(적용 범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 ---------- 국가유산청 ----------. |
| 제5조(문화재청의 사무)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 8. (생 략)<br>9.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국가유산청의 사무) 국가유산청장----------.<br>1. ~ 8. (현행과 같음)<br>9. ---------- 국가유산청장---------- |
|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 |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br>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br>④ (생 략) | ----------.<br>② 국가유산청장----------.<br>③ 국가유산청장----------.<br>④ (현행과 같음) |
| 제7조(선정ㆍ평가위원회)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문화재청의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br>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ㆍ2. (생 략)<br>3.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④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 | 제7조(선정ㆍ평가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br>③ ----------.<br>1.ㆍ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장----------<br>④ ---- 국가유산청장------- |

| | |
|---|---|
| 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국가유산청장----------. |
| ⑥ 문화재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국가유산청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의 전수교육학교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 ⑦ ----------. ---------- 국가유산청----------. |
| ⑧·⑨ (생 략) | ⑧·⑨ (현행과 같음) |
| 제9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문화 | 제9조(사업의 신청) ---------- 국가 |

| | |
|---|---|
| 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 5. (생 략) | 유산청장----------.<br>1. ~ 5. (현행과 같음) |
| 제10조(선정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br>1. ~ 4. (생 략)<br>② (생 략)<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④ 문화재청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선정평가) ① 국가유산청장----------.<br>1. ~ 4.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장----------.<br>④ 국가유산청----------. |
| 제11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한다. | 제11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국가유산청장----------. |
| 제12조(전수교육학교의 책무) ① ~ ④ (생 략)<br>⑤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수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이 | 제12조(전수교육학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

| | |
|---|---|
| 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이를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은 1년 이상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br>⑥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의 이수 미충족 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국가유산청----------. ----------. ---------- ---------.<br>⑥ ---------- ---------- 국가유산청----------. |
|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br>1. ~ 7. (생 략)<br>② (생 략) |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 ---------- 국가유산청장----------.<br>1. ~ 7.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업수행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 ----------.<br>1.·2. (현행과 같음)<br>3. --- 국가유산청---------- |

| | |
|---|---|
| ②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유산청장 ----------.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변경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 |
|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문화재청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교육학교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국가유산청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문화재청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학교가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가유산청장---------- |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 |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④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 국가유산청장----------. |
| ⑤ 제3항에 의한 전수교육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국가유산청장----------. |
| ⑥ 협약이 해약된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⑥ ---------- 국가유산청장----------. ----------. |
|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 ⑦ 국가유산청장---------- |

| | |
|---|---|
|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받을 수 있다. | ----------.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 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문화재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유산청장----------. |
| ⑤ 문화재청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국가유산청장----------. |
| ⑥ 문화재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 | ⑥ 국가유산청장---------- |

| | |
|---|---|
| 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 |
| 제17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생 략)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사업비 회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청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국가유산청장----------. ⑦ 국가유산청장----------. |
| 제18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교육학교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교육학교 자체의 규정에 따 | 제18조(사업비의 집행) ① ---------- 국가유산청장----------. ---------- |

| | |
|---|---|
| 라 사용하여야 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br>② 국가유산청장----------. |
| 제20조(연차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br>②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br>1. ~ 5. (생 략)<br>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생 략) | 제20조(연차평가) ① 국가유산청장----------.<br>② 국가유산청장----------.<br>1. ~ 5. (현행과 같음)<br>③ ---------- 국가유산청장----------.<br>④ (현행과 같음) |
| 제21조(종합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 | 제21조(종합평가) ① 국가유산청장----------. ---------- |

| | |
|---|---|
| 다. | --.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
| ③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국가유산청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22조(이의제기)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제22조(이의제기) ① ---------- 국가유산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문화재청장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유산청장----------. |
| 제24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 제24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 |

| | |
|---|---|
|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문화재청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br>②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문화재청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 국가유산청이 ---------- 국가유산청은 ----------.<br>② ----------. ---------- 국가유산청 ---------- |